

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

(권미경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56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년 6월 16일

발 의 자 : 권미경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이현찬, 이신혜, 김인제,
우형찬, 장우윤, 유용,
장인홍, 김창원, 서윤기,
강성언, 서영진, 김생환,
박운기 의원(13명)

1. 제정이유

- 서울특별시민에 근로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알권리 차원에서 근로권 보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 및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시장은 시민의 근로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시장은 근로권 교육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6조).
- 시장은 근로권 교육 시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(안 제7조).
- 시장은 근로권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마련하도록 함(안 제8조).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근로기준법

나. 관계부서 :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

다.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 미첨부대상

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권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,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근로권 보장 교육(이하 “근로권 교육”이라 한다)이란”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경우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방법, 피해구제 등을 포함한 근로권 및 각종 근로관계 법령 전반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과 시 소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근로권 교육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제5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기본적인 근로권 보장 확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근로권 교육에 필요한 실태조사,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교육 프로그램 마련 시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.

제6조(기본계획 수립) ① 시장은 근로권 교육 지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

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근로권 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
2. 근로권 교육 연구 사례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
3. 근로권 교육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
4. 그 밖에 근로권 교육 활성화 정책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

제7조(근로권 교육 실시) 시장은 근로권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) 시장은 근로권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1. 근로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
2. 대상자별 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개발
3. 그 밖에 근로권 교육정책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

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1항 제2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기술되어 해당 비용추계가 어렵기에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 : 서울특별시의원 권미경